

캄보디아 세법

1. 캄보디아 세금 요약

세금 종류 (세법규정)	세율
소득세 (제1장, 제1조 -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또는 개인 	20%(CDC승인사업의 경우는 0% 또는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 천연가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과 목재, 지하자원, 금, 보석 등 천연자원을 탐사하는 기업 	30%
미니멈 세금(제1장,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에 적용 ■ 법인세가 연간 매출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납부 	연간 매출액의 1%
원천징수세 (제1장 제25조 -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컨설팅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하고 개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자산 및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지급한 로열티 ■ 은행이 아닌 기업 또는 기업에 지급한 이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임대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을 한 개인에게 은행이 지급한 이자수입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이 아닌 예금을 한 개인에게 은행이 지급한 이자수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의 수입 	14%
근로 소득세 (제 2장, 제40조 - 제54조)	
고용주가 매월 아래의 금액을 원천징수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 리엘 - 800,000 리엘 (약 200달러 미만)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001 리엘 - 1,250,000 리엘 (약 200달러 - 312달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0,001 리엘 - 8,500,000 리엘 (약 312달러 - 2,215달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00,001 리엘 - 12,500,000 리엘 (약 2,215달러 - 3,125달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00,001 리엘 이상 (약 3,125달러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복리후생비 	시장가격기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거주자 급여 	20% 정액률
부가가치세 (제3장, 제55조 - 제8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대상 : 법인 및 개인 ■ 등록 : 모든 법인은 사업 개시 전에 부가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난 3개월의 매출 실적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매출 : 125백만 리엘 - 서비스 매출 : 60백만 리엘 ■ 부과세 과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 - 자체 사용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 - 선물을 주거나 재화나 용역을 원가이하로 제공 - 캄보디아로 재화를 수입 ■ 표준세율 ■ 수출을 하는 재화나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세율 ■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 ■ 부가세 신고 : 익월 20일까지 매월 신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세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을 하는 재화나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세율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신고 : 익월 20일까지 매월 신고 	
기타 세금 (제4장, 제85조)	
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특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제 운송에 관련 티켓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제 전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오락, 대형 자동차, 125cc이상의 오토바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 2000cc이상의 자동차 	30%
부동산 양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양도나 주식을 양도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를 확인하는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의 4%
유휴 토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발토지 평가 위원회가 시 또는 지방 정부당국과 협의하여 “유휴지”여부를 판단하고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 1,200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에만 해당 	유휴토지 평가금액의 2%
사업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사업자 등록 	약 300불
건물 및 토지의 임대세	임대수수료의 10%
수입관세	다양 (4종류: 0,7,15,30%)
수출관세	다양(대개는 10%)

2. 법인세 (Profit Tax for Corporate Enterprises)

가. 세율

- 일반 법인의 세율은 20%이며,
- 기존 사업체로써 Cambodia Investment Board of CDC(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003년 3월부터 향후 5년간 9%의 세율 적용
- Cambodian Investment Board 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는 최장 8년간 영(0)세율을 적용
- 생명, 재산, 기타 위험의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보험, 또는 재보험회사의 경우는 총 수신보험료(premium)에 대해서 5%
- 유전, 천연가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과 목재, 지하자원, 금, 보석류 등을 탐사, 개발하는 기업은 30%를 적용

나. 과세 대상 소득 (Basis for Profit Tax)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과 기업의 운영 중 또는 폐업 시에 매각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도 법인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자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및 로열티도 법인세 대상이 된다.

다. 필요경비의 공제 (Deductible expenses)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지급이자, 보상금 등
- 기업의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 동업자나 관련인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등은 그 지급사유가 명확하고 합당성이 있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 유, 무형 재산의 감가상각비 및 손비 처리

라. 공제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 등은 소득세 과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유흥비, 오락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경비.
- 개인 경비 또는 생활비
- 법인세, 미니멈 Tax, 원천징수세 및 급여소득세 등 각종 세금
- 특수 관계인과의 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손해

마. 손실의 이월 (Loss Carry-Forward)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년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이월이 됩니다. 손실이 2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향후 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바.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된다. 단 그 자산이 기업의 활동에 사용중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 건물 및 그 부속시설 5% 정액법
- 컴퓨터, 전자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은 50% 정률법
- 자동차, 트럭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25% 정률법
- 기타 유형 자산 20% 정률법
- 무형고정자산은 정해진 기간에 걸쳐 정액상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10%)
- 면세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투자승인 사업의 경우에 40%의 특별상각

사. 해외 납세 공제 (Foreign tax credits)

캄보디아 국적의 기업이 해외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캄보디아에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신청할 수 있다. 해외납세액 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며 단, 당해국과 캄보디아의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 납세신고 (Tax declaration)

법인세 신고는 매년 결산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주식사항 (Notes) 등을 첨부한다. 법인세 신고는 기업이 이익을 내든지 손해를 보든 지를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회계장부 기록유지 의무

납세자들은 회계관련 장부들을 10 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법인세 선납과 미니멈 Tax (Advance Profit Tax and Minimum Tax)

기업은 매월 매출액(turnover)의 1%를 익월 15 일까지 세무서에 선납하여야 하며, 연말 법인세의 선납에 해당된다. 1 년간 매월 납부한 이 선납 법인세는 연말 법인세 정산 시에 공제한다. 미니멈 Tax 는 법인세와 별개로 비록 특정 투자기업(법인세 특혜법인)이라도 납부해야 한다. 미니멈 Tax 의 세율은 매출액의 1%이다.

3. 배당 소득세 (Additional Profit Tax on Dividend Distribution)

이 세금은 2003 년도에 도입된 세금으로 세후 순이익을 배당을 배당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각 경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을 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면세의 혜택을 받는 법인이 배당을 한 경우에는 배당액의 20%
- 9%의 감세 혜택을 받는 법인이 배당을 한 경우에는 배당액의 11/91
- 20% 또는 30%의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액의 0%

4.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내국인은 국내·국외에서의 급여소득(Salary tax)에 대해 과세하며, 외국인은 캄보디아에서의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가. 과세 대상

캄보디아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를 하거나 또는 182 일 이상 체류한 자는 과세대상이 된다.

나. 과세대상 소득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compensation), 급여(salary), 임금(wage), 상여금(bonus), 시간외 수당, 기타 지급소득 (fringe benefit)은 개인 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 비과세 소득

다음은 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피고용자가 지출한 영업경비를 고용주가 지급할 때, 단 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증빙이 있어야 한다.
- 노동법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휴업(layoff)에 대한 보상(indemnity)
- 노동에 필요한 작업복, 특수작업 기구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공급하는 것
- 공무 출장비, 외지 근무비 등

라. 근로소득세율 및 공제대상(Relief)

과세 대상 월 소득 (리얼)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 0~800,000 리얼까지(\$200) 0%
- 800,001 - 1,250,000(\$200~\$312) 5%
- 1,250,001 - 8,500,000(\$312~\$2215) 10%
- 8,500,001 - 12,500,000(\$2215~\$3125) 15%
- 12,500,000 이상 (\$3125 이상) 20%

근로 소득세 공제 대상 (Relief)

- 자녀 공제 만 18 세까지 (취학 중이면 25 세까지) 월 75,000 리엘(1 명 당)
- 부양 가족-아내 (1 명만) (Dependent spouse) 월 75,000 리엘

마. 근로 소득세 납부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기업은 캄보디아나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해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가 근로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근로소득세는 익월 15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개인은 연말 종합개인소득세 신고(annual personal tax return)의무가 없다.

바. 해외 소득세 납부 및 공제 신고 (Foreign Tax Credits)

해외소득에 대한 당해국 소득세 납부 및 공제 신고는 개인·기업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사. 비과세 주거자

캄보디아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거주 182일을 넘지 않은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이윤 배당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5%의 배당금 소득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다른 세금은 없다.

아. 기타 소득세 (Fringe Benefit Tax)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주어진 기타 소득에 대하여 20%의 기타 소득세를 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에 같이 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es)

1997년 제정 및 1998년 6월 발효한 세법에는 원천징수를 거주인, 비거주인 및 이윤배당금 등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원천징수세는 매월 익월 15일까지 선납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거주인의 원천징수세율

-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받은 경영관리, 컨설팅 등 이와 유사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 15%
-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지급 및 지하자원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 15%

- 비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한 이자 소득 금액 : 15%
- 동산, 부동산의 임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 10%
-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 5%

나. 비거주인의 원천징수 (Non resident withholding tax)

비거주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할 때 15%를 원천 징수한다.

다. 배당금의 원천징수 (Dividend withholding tax)

배당금 원천징수는 국내, 외의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을 다음 공식과 같이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배당금 원천과세의 납부금은 연말 소득세 정산 시에 공제한다. 만약 납부금이 소득세 정산보다 많으면 차기 회계연도에 이를 반영, 정산한다. 단,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적용치 아니한다. 이미 배당 소득세를 납부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배당금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경우는 소득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 공식 : 배당금 x 소득세율 ÷ (100 - 소득세율)

6.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1997년의 세법제정에 이어 1999년 1월 1일자로 영업 외형세(turnover tax)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 부가가치세는 다음 요율을 적용, 상품 및 서비스에 과세한다. 캄보디아 내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10% / 캄보디아로 수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10% /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0%

가. 과세 대상 품목

- 과세대상인(taxable person)이 현금이나 기타의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과세대상인이 사용을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
- 과세대상인이 시가보다 싸게 선물을 하거나 공급을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개인사용(for personal use)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수입하는 상품

나. 비과세 대상 품목

- 공공 우편 서비스
- 병원, 의원, 의료업, 치과 등의 영업과 의약품, 치과용 재료 등의 판매.
- 국영의 여객전용 공공 운수 사업
- 보험 사업
- 일차 금융업(primary financial services)
- 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품
- 경제 재무부에서 인정한 비영리 목적의 공공 사업

다.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라 함은 캄보디아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상품이나 여객을 해외로 수송하는 것과 수출과 관련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여객을 해외로 수송하는 것 등을 말한다. 서비스의 수출에 있어서 납세대상자는 그 서비스의 용도가 해외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라. 부가세 사업자 등록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다음의 업종에 해당되면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 수입자, 수출자, 투자회사.
- 지난 3 개월 간 (또는 향후 3 개월간) 상품 매출이 1 억 2 천 5 백만 리엘을 초과(또는 추정)되는 기업 (2000년 10월 기준 약 32,000 불)

- 지난 3 개월 간 (또는 향후 3 개월간) 서비스 매출이 6 천만 리엘을 초과(또는 추정)되는 기업 (2000 년 10 월 기준 약 16,000 불)
- 정부와의 납품, 용역 등의 계약 금액이 3 천만 리엘이 초과하는 기업.
- 과표 금액은 거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세 부분은 제외하며 다른 비과세 해당사업의 매출도 제외된다.
- 부가세 사업자 등록은 영업을 개시하고 30 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마. 부가세 환급 (Input tax credit)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로써 부가세 환급(claim input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희비, 오락비나 승용차 구입 및 승용차 유류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세 환급 신청은 부가세 영수증(VAT tax invoice)과 세관에서 발행하는 원자재 등의 수입 증명(Bill of entry for import)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부가세 납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익월 2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만약 환급 신청액이 납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납금(tax credit against any outstanding VAT tax liability)으로 하거나 또는 차기 납부액에 반영하여 공제, 정산한다.

7.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 (Special Tax on Certain Goods and Services)

특별세는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에 과세한다.

- 국내에서 판매하는 국제선 항공료 및 국제 전화비 2%
- 모든 종류의 음료수, 담배 및 유희, 위락 서비스. 10%
- 모든 유류제품 및 2000cc 미만의 승용차와 인정된 그 부속품 20%
- 2000cc 이상의 승용차와 인정된 그 부속품. 30%

8. 수출입 관세 (Export and Import Duties)

수출 및 수입하는 모든 상품은 관세청에서 정한 수출·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관세는 상품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다.

- 생필품 (의약품, 소금, 야채, 철재, 포장재, 설탕 등)
- 기계, 장비류, 그 부품, 기계공구, 담배원료 잎, 밀가루, 산업용 지하자원 제품류 15%
- 휘발유 등 유류, 가스, 디젤유, 윤활유 20%
- 화장품, 의류, 원단, 신발, 가죽제품, 가정용 전기기구,섬유, 녹말, 접착제 및 효소 35%
- 차량 40 - 120%
- 알코올, 주류 및 기차 음료 35%
- 담배 및 오토바이 50%
- 학교용품, 의약품, 운동기구, 비료, 법씨, 농업용 트랙터 등은 수입관세 면세품임.
- CDC의 투자승인을 받고 면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수입관세 면제
- 관세 적용율은 HS CODE BOOK을 참고하여야 한다. (Tax rate tariff index book)
- 2000 년 10 월 2 일자로 CIF 가격으로 4,000 불이 넘는 수입품은 SGS 검사를 받아야 한다.
- SGS 신청시 최하 210 불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규 규정)
- SGS 검사면제 항목 : 귀금속류, 예술품, 폭발물, 무기류, 산 동물, 신문, 잡지, 개인소지품 및 가정용품, 샘플 및 소포, 인권단체의 원조물, 외교단체 및 유엔단체의 보급품 또는 선물, 기타 원조물, 정부의 수입품, 고철, 담배, 재수출을 위한 임시 하치품, CIF 가격 4,000 불 이하.

9. 기타 세금 (Other taxes)

가. 사업소세 (Patent tax)

매년 기업의 사업(영업) 허가에 따른 세금을 의미하며,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무역업 및 제조업 분야는 서비스업과는 다른 과표를 적용한다. 1999년에 공포된 세법에 의하여 모든 기업은 연간 거래외형이 비록 적더라도 최소한 연간 1,140,000리엘을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영업)허가증 (Patent Tax Certificate)을 발급한다.

나. 소비세 (Consumption tax)

소비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에 4%를 적용하여 부과했으나 1999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다.

다. 등록·양도세 및 인지세 (Registration and transfer taxes, Stamp duty)

등기세는 토지 또는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시에 토지등기소에서 지역별로 감정해 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4%를 등기세로 부과한다. 다음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는 100,000 리엘의 인지세를 받는다.

라. 미개발 토지세 (Tax on unused land)

미개발 토지세는 주거자가 있든 없든 간에 부과한다. 미개발 토지세는 "미개발토지가감정 위원회"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납세는 매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미개발 토지 1,200m²까지는 0% / 미개발 토지 1,200m² 이상 2%

10. 세법위반 관련벌금

1997년 제정 세법에는 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다음의 추징과세를 하게 되어있다.

- 납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가산세
-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고도 15일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25%의 가산세
- 세무서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결과 결정세액의 40%의 가산세
- 상기의 모든 경우에 매월 2%의 이자도 가산이 됩니다.
-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 국제간 조세협약(International Treaties)

현재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되어있으며 다른 국가와는 아직 협약이 되어있지 않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우리 회계 법인 시암립 지사 업무중 펴